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전임교원(신규, 재, 승진, 정년보장)임용세칙

제정	1997. 12. 1.
개정	2000. 3. 3.
개정	2002. 10.17. 부칙 제 47호
개정	2005. 3. 4. 부칙 제 62호
개정	2008. 2. 1. 부칙 제 81호
개정	2012. 9. 7. 부칙 제 97호
개정	2016. 12. 1. 부칙 제123호
개정	2019. 7. 17. 부칙 제13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전임교원(신규, 재, 승진, 정년보장) 임용 규정에서 심사에 필요한 연구 실적물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 실적물”이라 함은 학위 논문, 심사를 받은 정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저서를 말하며, “저서”는 대학의 해당 전공 교과목의 교재 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연구 수준 향상에 공헌하는 단행본이어야 한다. 다만, 조경학전공에 한해 공인된 국제설계 경기의 상위 입상(3위 이내)작품 또는 전국 규모의 국내 설계경기의 최상위 당선 작품도 연구실적물로 인정하며, 인정점수는 다음과 같다.

1. 단독 설계: 100점
2. 2인 공동설계: 70점
3. 3인 공동설계: 50점
4. 4인 이상 공동설계: 30점

② “국제적 수준의 연구실적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연구실적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1.]

1. SCI(E), SSCI, A&HCI 등재학술지 게재논문·국제설계경기 당선작 및 전국 규모의 국내설계경기 1등 당선작(이하 “SCI급 연구실적”이라 한다) [개정 2016.12.1.]
2. 한국연구재단 및 SCOPUS 등재 학술지의 게재논문 [개정 2016.12.1.]

③ 전임교원(재, 승진, 정년보장)임용 심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산학협력 실적물을 연구실적물로 포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적인 인정기준 및 범위 등은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과) 내규로 정하며, 학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다. [신설 2019.7.17.]

1. G7 국가에 등록된 특허
2. 기술이전 및 기술자문 실적
3. 산업체 연구계약 실적 및 교류 실적
4. 창업 실적 등

제3조(연구그룹 및 지정) ① 연구그룹을 “생명·환경1”, “생명·환경2”, “인문·사회”로 구분한다.

② 신규 채용된 전임교원은 제1항의 연구그룹에 대하여 「연구그룹 지원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장은 신규 채용된 전임교원의 연구그룹에 대한 적절성을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평가하고, 해당 교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그룹을 지정한다.

[신설 2016.12.1.]

제4조(심사대상자 자격요건) 승진 및 정년보장을 위한 그룹별 심사대상자 자격요건은 별표1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대상자 자격요건」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1.]

부칙(제13호)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호)

이 규정은 200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7호)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2호)

이 규정은 200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호)

이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7호)

이 규정은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 2016.12.1>

제1조(시행일)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그룹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 임용된 전임교원의 경우 현직급에서의 승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연구그룹 지정의 적용례)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조교수인 전임교원은 부교수로 승진 후 「연구그룹 지원서」를 학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그룹을 지정한다. 이 경우 부교수로 승진한 전임교원의 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시 지정된 연구그룹의 기준을 충족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제132호, 2019. 7. 17.)

제1조(시행일)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 3. 1.자 대학교원 재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 심사 시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학부(과)에서는 2019년 9월 말까지 내규 제정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조(연구그룹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 임용된 전임교원의 경우 현직급에서의 승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대상자 자격요건

제정 2003.06.27.
 개정 2004.09.10.
 개정 2008.02.01.
 개정 2012.09.07.
 개정 2016.12.01.
개정 2019.07.17.

연구그룹	심사대상자 자격요건
생명·환경1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전부를 SCI급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현직급 재직기간 총괄연구실적물 중 SCI급 연구실적 단독연구, 공동연구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연구실적물의 영향력지수(IF)¹⁾ 합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교수 승진 시 : 12이상 2. 교수승진 및 정년보장 시 : 30이상
생명·환경2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전부를 SCI급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단독연구, 공동연구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연구실적물 제출 편수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교수 승진 시 : 3편 이상 2. 교수승진 및 정년보장 시 : 6편 이상
인문·사회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전부를 국제적 수준의 연구실적물로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중 SCI급 연구실적 단독연구, 공동연구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연구실적물 제출 편수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교수 승진 시 : 1편 이상 2. 교수승진 및 정년보장 시 : 2편 이상

[별지 서식]

연구그룹 지원 신청서

신청인	소속		전공분야
	직급	생년월일	성명
	신청현황 생명·환경1[] 생명·환경2[] 인문·사회[]		
연구 계획 및 신청 사유			
첨부서류	1. 총괄연구업적 목록 1부. 2. 학과(부) 회의록 1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전임교원 임용세칙」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그룹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일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학과(부)장 (서명 또는 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귀하

총괄연구업적 목록

연번	제목	발표년월	영향력지수 (IF)	학술지명	학술지 등재구분	분류	저자		연구분야
							인원	공동연구 내역	
1	(작성예시)	2015.10	3.242	Composites Part B - Engineering	SCI	논문	5	교신저자	생명·환경
소계(총00편)		생명·환경[]편, 인문·사회[]편							